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32호

도시관리계획(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87호(2013.11.21)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8월 4일
서울특별시장

I. 변경결정 취지 : 변경 없음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사항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 없음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 없음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: 변경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: 변경 없음

2. 건축물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: 변경

가. 건축물의 용도 : 변경 없음

나. 건축물의 밀도 : 변경

(1) 건폐율 : 변경 없음

(2) 용적률 : 변경 없음

(3)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: 변경

○ 공 통 사 항 : 변경 없음

○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유형 : 변경

• 인센티브 유형 C1 : 일반상업지역 : 변경 없음

• 인센티브 유형 C2 : 일반상업지역(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) : 변경 없음

• 인센티브 유형 SR : 준주거지역(일반주거지역→준주거지역) : 변경 없음

• 인센티브 유형 R3 : 제3종일반주거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→제3종일반주거지역 : 변경

【 정 정 전 】

구 분		계획내용	
가구번호		E-1 ①~⑧ / E-3-a ①~⑨ / E-3-b ①~⑥ / E-3-c ①~② E-4-a ⑨, ⑩ / E-4-b ①~⑩ / E-5-a ⑤~⑥ / E-5-b ①, ③	
용도지역		제3종일반주거지역	
위치특성		간선도로변, 이면도로변	
기준/허용용적률		220/250, 200/230	
중점계획목표		-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-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건축(벽면)선, 쌈지형공지 조성유도	
항목	세 분	완화기준	비 고
규 제 형	공동개발	공동개발(지정)	기준용적률 × 0.03
	대지내 공 지	건축(벽면)한계선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/대지면적) × 0.5
	주차계획	공동주차출입구	기준용적률 × 0.02
유 도 형	공동개발	공동개발(권장)	기준용적률 × α 2필지이하 α=0.02 3필지이상 α=0.03
	대지내 공 지	쌈지형 공지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/대지면적) × α 피로티구조 α=0.5 침상형구조 α=1.2 개방형구조 α=1.4
	건축물 용 도	권장용도	기준용적률 × (권장용도면적/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) × 0.25 20%이상 준수시

【 정 정 후 】

구 분		계획내용	
가구번호		E-1 ①~⑧ / E-3-a ①~⑨ / E-3-b ①~⑥ / E-3-c ①~② E-4-a ⑥~⑨, ⑩ / E-4-b ①~⑩ / E-5-a ⑤~⑦ / E-5-b ①, ③	
용도지역		제3종일반주거지역	
위치특성		간선도로변, 이면도로변	
기준/허용용적률		220/250, 200/230	
중점계획목표		-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-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건축(벽면)선, 쌈지형공지 조성유도	
항목	세 분	완화기준	비 고
규 제 형	공동개발	공동개발(지정)	기준용적률 × 0.03
	대지내 공 지	건축(벽면)한계선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/대지면적) × 0.5
	주차계획	공동주차출입구	기준용적률 × 0.02
유 도 형	공동개발	공동개발(권장)	기준용적률 × α 2필지이하 α=0.02 3필지이상 α=0.03
	대지내 공 지	쌈지형 공지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/대지면적) × α 피로티구조 α=0.5 침상형구조 α=1.2 개방형구조 α=1.4
	건축물 용 도	권장용도	기준용적률 × (권장용도면적/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) × 0.25 20%이상 준수시